



안사회계법인 • 829-7575

세 稅 계 計 재 財 경 經 AnSwer

••• 2021/3/8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과와 稅計經營戰略

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, 세무조정 핵심 점검사항(Checklist)

개념구분	핵심점검사항, 내용 · 조건, 감면비율 등
중소기업 범위	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① 업종 : 소비성 서비스업(여관, 주점, 오락, 유흥)이외 많은 업종 ② 매출액(업종별 400~1500억원 이하) ③ 대기업과 독립성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하
특별세액감면비율	• 소기업 : 수도권 외 제조 등 30%, 수도권 제조 등 20%, 도매·서비스업 등 10% • 중기업 :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%, 수도권 지식기업 10%, 도매업 등 5%
창업중소기업 등 감면	창업 후 5년간 - 청년창업중소기업 : 수도권 등 50%, 기타지역 100% - 일반창업중소기업 : 수도권 감면 없음. 기타지역 50%
창업벤처중소기업	•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: 5년간 50% 감면
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	•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: 5년간 50% 감면
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	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창업중기 : 3년간 75%+2년간 50%
소규모 창업중소기업	매출액 연간 4800만원 이내, 5년간 감면 : 수도권 내 50%, 이외는 100%
고용창출기업 추가감면	상기감면비율에 상시근로자수 증가비율×50%를 추가함
중소기업 세액공제 등	투자액×3%(중견기업은 2%), 위기지역 내 투자 10%,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10%씩 높음
기타의 중소기업 혜택	① 최저한세율 7%로 최저 ② 접대비 한도 기본금액 3600만원(일반 1200만원) ③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④ 법인세 분납기간⊕2개월(일반 기업은 1개월)

고객 담당자 :